

요약

-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과 완화의료의 한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 및 사법적 판단이 국제적으로 확대됨
-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의회 재의결을 통해 조력사망을 입법화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 역시 2025년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임
- 조력사망의 허용 범위와 절차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의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기재하고 자연사로 분류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 적용과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이행을 둘러싼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병행됨
- 조력사망을 입법화한 국가들은 이를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하여 생명보험 자살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병행함
-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더불어 조력사망 찬성 여론이 76.3%에 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임종기 자기결정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조력사망 합법화는 사망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전 세계적으로 조력사망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영국과 프랑스 역시 조력사망 합법화를 위해 활발한 입법 절차를 전개하고 있음
 - 조력사망(Assisted Dying)이란 말기 환자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하거나 의사의 직접적인 투여(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는 모든 의료적 지원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2016년 「연명치료중단법」 제정을 기점으로,¹⁾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2024년 조력사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발의로 이어짐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25년 12월 기준 약 32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등록 비율이 23.7%(237만 명)에 달함²⁾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이를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법적 의사 표시임
 - 조력사망 입법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하며 임종기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³⁾
 - 조력사망은 자연적인 죽음의 과정을 방해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형태의 연명치료 중단(Passive euthanasia)을 넘어 환자의 능동적 의사를 반영하는 임종 방식으로, 대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안착된 이후 자기결정권의 범위 확대와 함께 논의·도입되는 제도적 유형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조력사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된 '부진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2023헌마1610)'을 2024년 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심리 중임⁴⁾
 - 「조력조업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2)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본고에서는 조력사망 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고찰하고, 입법화 과정에서 부각된 생명보험 실무상의 핵심 쟁점 및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자 함
 - 생명보험은 사망위험을 담보하는 금융상품으로,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1) 공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 2016. 2. 3., 시행 2018. 2. 4.)임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페이지(<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3) Yun, Young Ho, Sim, Jin-Ah, Choi, Yeoni, Yoon, Hyejeong(2022), "Attitudes toward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9, No. 9

4) 해당 청구의 핵심은 형법상 자살방조는 처벌하면서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은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있음

2.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동향

-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둘러싼 입법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표 1〉 참고)
 - 조력사망의 제도화는 형법 내 면책조항 삽입(캐나다·벨기에), 별도 특별법 제정(미국·호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독일·콜롬비아)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확산됨
 - 미국 오리건주는 1994년 세계 최초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입법적 근거로 하여, 조력사망을 엄격한 절차와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을 제정함
 - 스위스의 조력자살 제도는 죽을 권리를 승인한 결과가 아니라, 이기적 동기에 기초하지 않은 조력을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입법선택의 산물이며, 그 규율 논리는 권리보장이 아니라 형벌권 자제에 있음⁵⁾
 -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은 2023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회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은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절차를 통해 재의결함으로써 조력사망을 최종 입법화함
 -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은 1961년 제정된 자살법(Suicide Act)에 따라 타인의 자살을 돕거나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최대 1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조력사망 관련 법안이 2025년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세부 심의가 진행 중임⁶⁾
 - 프랑스는 대통령 주도로 조력사망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2025년 하원 가결 이후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음⁷⁾

〈표 1〉 조력사망 합법화 현황

구분	국가	
입법 완료	자기복용원칙	스위스(1937), 미국 11개 지역(오리건주 1994), 호주 전체 주(빅토리아주 2019), 오스트리아(2021)
	의료진 투약 허용(안락사)	네덜란드(2001), 벨기에(2002), 룩셈부르크(2009), 캐나다(2016), 스페인(2021), 뉴질랜드(2019), 포르투갈(2023)
사법판결 (세부 입법 진행 중)	콜롬비아(1997), 이탈리아(2019), 독일(2020), 에콰도르(2023)	
입법 추진 중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과 프랑스, 2025년 하원 통과 후 상원 심의 중	

주: 괄호 안은 제정(결정) 연도임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 조력사망 합법화의 주요 배경으로는 자기결정권 및 존엄한 임종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인권론적 관점과 함께, 완화의료로도 해소되지 않는 고통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들 수 있음

5) Swiss Criminal Code Art. 115(Incitement and assistance to suicide), "Any person who, for selfish motives, incites another to commit suicide or provides assistance for that purpose shall, if the suicide is carried out or attempted, be liable to a custodial sentence of up to five years or to a monetary penalty."

6) Terminally Ill Adults (End of Life) Bill 2024

7)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ompagnement des Malades et de la Fin de Vie(환자 및 임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 법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49401821/>

- 조력사망 제도의 확산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입법부보다 사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다수인데, 이는 조력사망 문제가 정책 선택이나 윤리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함⁸⁾
 - 사법부는 조력사망을 다룰 때 인간의 존엄,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해석의 중심에 둠
 - 예컨대, 캐나다 대법원은 조력사망을 전면 금지하는 형법 규정이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보장하는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하였음⁹⁾
 - 영국 정부 또한 조력사망을 인권 문제로 규정하여 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인권적 정당화의 핵심을 신체적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통제불가능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존엄한 임종을 선택할 권리로 구체화함
- 또한, 완화의료를 통해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력사망은 완화의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완화의료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되는 최종적 선택지로 이해됨
- 마지막으로, 조력사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찬성 여론은 제도 도입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함
 - 전 세계적으로 조력사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뉴질랜드는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65.1%의 찬성을 확보하였고, 프랑스 역시 2023년 시민의회 속의 결과 참가자의 76%가 합법화에 찬성함¹⁰⁾
 - 캐나다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4.1%가 조력사망을 선택할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견고함¹¹⁾

○ 조력사망 제도는 의료적 요건의 범위와 생명종결에 이르는 최종 행위의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함(〈표 2〉 참조)

- 합법적 조력사망의 의료적 요건은 제도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요소로서, 미국은 대상자를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시한부 환자로 엄격히 제한함
 - 반면 캐나다는 초기에는 적용 대상을 시한부 환자로 제한하였으나, 2021년부터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망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함¹²⁾
- 미국, 스위스, 호주 등은 조력사망에서 자가투약원칙을 채택하는 반면, 캐나다 등은 근육 무력증과 같이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 즉 안락사를 허용함

○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국가들은 강요된 죽음이나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선택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채택함(〈표 2〉 참조)

-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 압박 속에서 죽음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 나아가 제도가 시한부 환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됨

8) 캐나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이 해당됨

9) 카터 사건(Carter v. Canada, 2015)에서 원고들은 스스로 자살을 이행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중증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을 종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조력사망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존을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10) Convention Citoyenne Cese(2023), "Rapport de la Convention Citoyenne sur la Fin de Vie"

11) Health Canada(2023), "Fourth 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2022"

12) 2021년 캐나다 형법 제241.2조 제2항 d를 삭제하고 제241.2조 제1항 c 및 제2항을 신설함

- 예컨대 영국은 취약계층 보호와 개인의 선택권 보장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의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임

-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사망 유형은 사후 법적 효력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력사망 합법화 국가에서는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기재하고 사망 유형을 자연사로 분류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예방함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조력사망을 자살이나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 보건당국은 조력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사망 유형을 자연사로 기재하도록 함¹³⁾
 - 스위스에서는 조력사망이 의료행위가 아닌 비범죄화된 자살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비자연사로 분류됨

〈표 2〉 주요국의 조력사망 제도

구분	미국 (오리건 등 10개 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입법 중)	프랑스 (입법 중)
명칭	의료조력사망 (MAID), 존엄사	의료조력사망 (MAID)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사망 (Assisted Dying)	조력사망 (Aide a Mourir)
사망방식	자가투약원칙	자가투약과 의료진 투여 선택 가능	자가투약원칙	자가투약원칙	자가투약원칙, 의료진 투여 예외적 허용
의료적 요건	수명 6개월 미만의 말기질환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질환	불치성, 참을 수 없는 고통, 또는 심각한 장애	수명 6개월 미만의 말기질환 진단	단기 또는 중기적 생명 위협, 불치성, 참을 수 없는 고통
의사결정능력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의 자발적 요청				
안전장치	2명의 의사 승인, 15일 간격의 구두 요청 2회와 서면 요청 1회	2명의 독립적인 의료진 평가	사후 보고의무 및 형사심사, 자발성 입증 자료 제출	2명의 독립적인 의사 확인, 고등법원 판사의 최종 승인	의료진 이중 확인, 2일 숙고기간, 완화의료 병행
공식사인 (사망종류)	기저질환 (자연사)	기저질환 (자연사)	조력자살 (비자연사)	기저질환 (자연사)	기저질환 (자연사)
생명보험 자살면책	적용 배제	적용 배제	적용	적용 배제	적용 배제

주: MAID는 미국에서는 Medical Aid in Dying, 캐나다에서는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을 의미하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하원에서 채택된 내용으로 상원 심의 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관계 법령 및 지침과 다수의 입법 논의 자료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3. 조력사망 합법화와 생명보험 쟁점

- 조력사망 제도 도입은 생명보험금 지급 기준인 자살면책 적용 여부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이행을 둘러싼

13) ORS 127.890 §3.14(2), "Actions taken in accordance with ORS 127.800 to 127.897 shall not, for any purpose, constitute suicide, assisted suicide, homicide or mercy killing under the law."; Health Canada(2025), "Technical Guidance Document: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the Regulations for the Monitoring of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병행됨¹⁴⁾

- 일반 생명보험 계약에는 자살면책조항이 포함되어, 보험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함
- 조력사망 합법화 국가의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조력사망을 목적으로 질병을 은폐한 채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및 고지의무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음

○ 구체적으로 먼저, 세부 입법을 통해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함으로써 생명보험의 자살면책조항 적용을 차단함

- 조력사망에 대해 자살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사자가 조력에 의한 사망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정당화됨
- 미국 오리건주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조력사망이 자살이나 살인 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살면책조항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¹⁵⁾
 - 캐나다는 관련 지침을 통해 형법상 절차를 준수한 조력사망을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통상 2년으로 설정된 자살면책기간의 적용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함¹⁶⁾
- 스위스는 조력사망을 비범죄화된 자살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 자살과 동일한 면책기간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자살면책기간 2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
- 프랑스에서는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의 자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금이 면책되지만, 향후 조력사망이 법제화될 경우 이를 의료적 처치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해당 법안 제20조에 자살면책조항의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음¹⁷⁾
 - 영국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을 사인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생명보험의 자살면책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함¹⁸⁾
- 다만,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조력사망을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세부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자살면책기간(3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¹⁹⁾
 -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의제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행정 지침이 부재하여, 독일 보험업계는 이를 가입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자살로 분류하고 기존의 면책 규정을 적용함

○ 다음으로, 역선택 및 고지의무 위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위험 선택권과 부당 가입에 대한 실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됨

14) 사망 시점의 조기 도래는 자산운용 수익기간을 단축시키나, 그 영향이 적어 보험료율에 반영되는 비중은 작고, 또한 생명보험의 조기지급리스크와 연금상품의 지급액 감소 이익이 상호 상쇄되는 구조적 특성상,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임

15) ORS 127.892 §4.02 (2), "A qualified patient's act of ingesting medication to end his or her life in a humane and dignified manner shall not have a redundant effect upon a life, health, or accident insurance or annuity policy."

16) Health Canada(2025); CLHIA(2016), "CLHIA Position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17) 상세한 내용은 프랑스 조력사망 법안에 대한 영향평가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Premier Ministre(2024), "É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ompagnement des Malades et de la Fin de Vie"

18) UK 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2024), "Assisted Dying/Assisted Suicide; ABI(2024), ABI position on Assisted Dying Bill"

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절대적 권리라고 판결하며 기존의 금지 조항(형법 217조)을 위헌으로 결정함

-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함
- 캐나다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보고체계를 통해 보험회사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함
 - 의료진은 환자가 조력사망을 요청한 날짜, 질병의 지속 기간 등을 보건부에 상세히 보고해야 하고, 보험 청구 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동의하에 보건부의 보고서를 조회하여, 보험 가입 시점의 고지 내용과 실제 질병 발생 시점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함²⁰⁾
- 프랑스에서는 조력사망에 대한 자살면책 적용 배제를 의무화하되, 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의 자유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함²¹⁾
 -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점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및 현재 진행 중인 임종 지원(조력사망)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
 - 만약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중증 질환 진단 사실이나 임종 지원 신청 사실을 은폐하는 등 의도적인 허위 고지나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법에 근거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4. 결론

-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여론이 76.3%에 이르는 등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임종기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조력사망 합법화는 사망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조력사망 제도 도입 시 해당 사망을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 처리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자살면책조항 적용 배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조력조업사에 관한 법률안」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력사망을 이유로 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²²⁾
 -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제37조에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보험 등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 조력사망을 암 등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간주할 경우, 생명보험의 자살면책 규정은 물론 손해보험회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입 후 2년 경과 시 자살을 보장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의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사

20) Health Canada(2025), Section 8.15; CLHIA(2016)

21) Premier Ministre(2024)

22) 조력조업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12) 제21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조력조업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 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를 원천적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²³⁾

- 더불어, 조력사망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법률로 보호하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역선택 차단 및 고지의무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2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손해보험회사용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